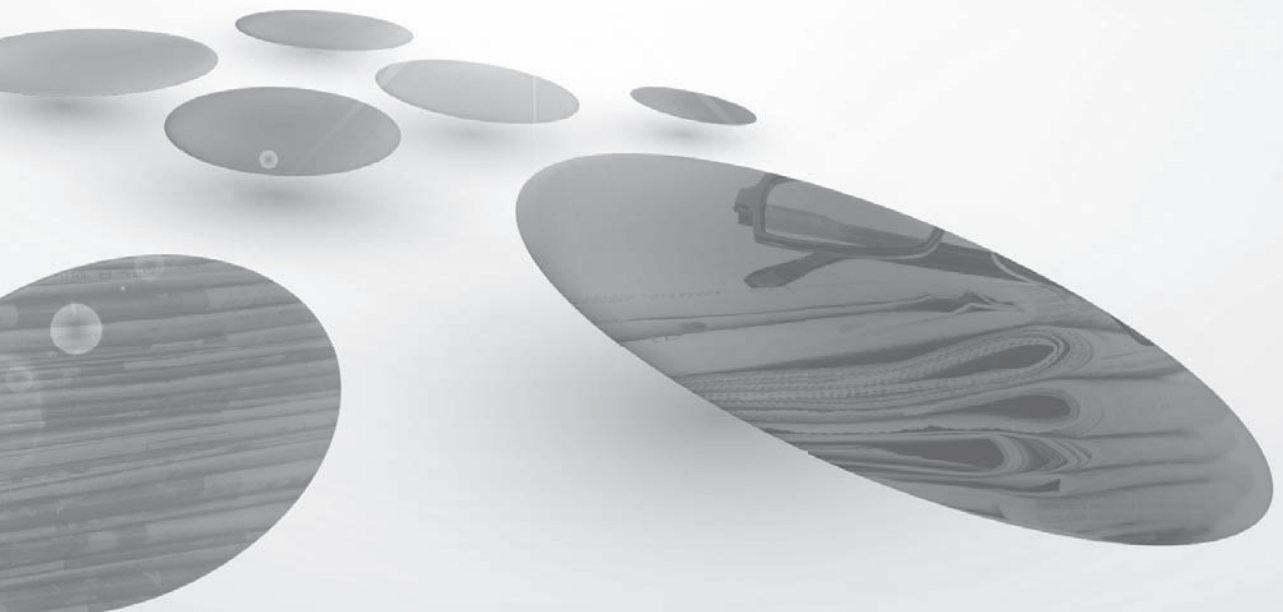




사법보도준칙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1. 재판에 대한 부당영향 금지

▲ 2011-117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2.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3. 한국일보 발행인 박 진 열

〈주문〉

東亞日報 2011년 7월 11일자 A1면 「북한 지령 받아 지하당 결성 추진/‘반값 등록금’ 단체 간부 연루 혐의/검찰, 노조간부-野당직자 등 10여명 자택 압수수색」, 朝鮮日報 7월 11일자 A12면 「북한 225국의 지령 받는 지하당 2곳 적발/총책인 IT업체 대표 구속/‘반값 등록금’ 주도 단체의 기획실장 1명 포함/“시민운동 방해 의도” 주장/ 당국선 “순수한 간첩수사”」, 한국일보 7월 11일자 8면 「지하당 건설 北 지령받고 활동/각계인사 친분 中企대표 구속/반값 등록금 시민단체, 지원 관련 압수수색 반발」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東亞日報 朝鮮日報 한국일보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東亞日報) 『노동·시민단체 간부와 정당 관계자들이 북한 노동당의 배후 조종을 받아 국내에 지하당을 설립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공안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해외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해 지령을 받고 국내에 종북(從北) 성향의 지하당을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40대 자영업자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지하당 구축과 해외공작을 담당하는 북한 노동당 225국(옛 대외연락부)의 지령을 받아 1994년부터 최근까지 50여 차례 일본과 중국을 오

가며 국내 정세 정보를 수집해 북측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4~9일 김 씨의 동업자, 대학 동창인 야당 당직자, 노동단체 간부 등 10여 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차례로 압수수색해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자 중에는 ‘반값 등록금’ 운동을 주도한 단체 중 하나인 한국대학교육연구소도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공안당국이 반값 등록금 운동에 ‘붉은 덩치’를 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연구소 소속 간부 홍모 씨가 지하단체에 연루돼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는 반값 등록금 운동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통일전문 월간지 ‘민족21’ 주간 안영민 씨(43)와 안 씨의 부친인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78)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 씨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관계자와 불법 접촉했고 안 전 교수는 중복 성향의 블로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朝鮮日報)=『노동계와 학계 인사 10여명이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에 지하조직 2개를 만들어 10여년간 암약하면서 국내 정세 등을 보고한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 등 공안 당국은 이 같은 혐의로 ‘북한 225국의 국내 지하당’ 조직 총책임자 IT 업체 대표인 김모 씨를 지난 8일 구속했으며, 조직원인 노동조합 간부 등 관련자 13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10여 년간 북한 225국(옛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지령을 받아 서울·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지하당을 만들어 국내 정세와 동향 관련 정보를 수시로 북측에 보고한 혐의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북한 225국은 지난 2009년 기구 개편과 함께 노동당에서 내각 산하로 들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노동당 지령을 받는 대남 공작 주력 부서”라고 말했다.

당국은 김씨가 1994년 4월 이후 최근까지 일본과 중국을 각각 38차례, 18차례씩 오가며 제일 간첩단이나 북측 고위 간부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한 225국이 김씨를 통해 지하당 조직 구성과 수집할 정보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단서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목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한국일보)=『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중소기업 대표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안당국의 수사대상에는 김 씨와 친분이 있는 노동계 인사를 비롯해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김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일본을 50회 이상 오가며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와 북한 공작원 등을 만나 남한 내 지하당을 건설하라는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당 225국은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후신으로 간첩 남파 및 고정간첩 관리, 지하당 구축 등을 주 임무로 하는 대남공작 부서다.

검찰은 김 씨를 비롯해 김 씨와 가까운 회사동료와 대학동창, 노동단체 간부, 지방대 교수, 야당 당직자 및 월간지 대표 등 모두 13명의 자택과 직장 사무실을 이달 4~7일 잇따라 압수수색 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기사들이 나간 시점에 수사대상자들은 재판받을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전단계인 기소도 진행되지 않았다. 단지 공안당국이 일부만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수사대상자들의 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기는 어려운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신문들은 수사대상자들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북한 지령 받아 지하당 결성 추진」(東亞日報)·「북한 225국의 지령받는 지하당 2곳 적발」(朝鮮日報)·「지하당 건설 北 지령받고 활동」(한국일보)이라고 단정적인 제목을 달았다. 이는 같은 날 발행된 다른 신문들이 제목에 따옴표를 달아 놓음으로써 아직까지는 그 혐의내용이 취재원인 수사당국

의 주장임을 밝힌 것과는 비교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단정적인 제목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4조 「사법보도 준칙」 ①항(재판에 대한 부당영향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77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일보 발행인 유 종 관

〈주문〉

세계일보 2011년 7월 12일자 10면 「‘여의도 랜드마크 파크원 홍물로 방치된다’ 우려/불법적 지상권 설정계약 20일 판결 이뤄져/통일재단 승소땀 ‘금융허브’ 육성정책 순조」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통일교 세계선교본부 건립부지(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가 송사의 대상이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세계종교로 성장한 통일교 유지재단(통일재단)이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신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매입한 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산권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른바 ‘파크원 소송’이 20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선 건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예상된다.

통일재단 측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최종 결정권이 없는 K 전 이사장이 신자들의 의사와는 달리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개발회사인 Y22에게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이전하고 그만큼 재단에 손해를 끼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이며, 결국 K 전 이사장의 배임에 의한 지상권 설정 계

약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특히 “Y22가 건물을 매각한다면, 당초 통일교 세계본부를 짓기 위한 프로젝트가 사라지는 것으로서, 지상권 설정계약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이기에 계약은 원천무효”라고 못을 박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건물을 파는 것을 단호히 막겠다는 자세다.

‘여의도 성지보호 신도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6일 여의도 ‘파크원’ 현장에서 열린 촛불 기도회. 통일교 신도들은 이날 “Y22에 불법 귀속된 재산권이 통일재단에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의도 금융허브 정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에서는 여의도 일대를 ‘국제 금융 중심지구’로 지정하여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AIG가 개발하고 있는 SIFC를 비롯해 ‘파크원’도 한몫을 해낼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는 Y22가 승소를 한다면 갈 길은 멀다. 통일교 신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마땅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신한은행과의 자금조달 MOU가 무산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업계에선 자칫 건축 중인 건물들이 흉물로 방치될까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여의도 랜드마크 파크원 흉물로 방치된다’ 우려

불법적 지상권 설정계약 20일 판결 이뤄져
통일재단 승소판 ‘금융허브’ 육성정책 순조

통일교 세계선교본부 편집지(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가 승사의 대상이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세계종교로 성장한 통일교 유지재단(통일재단)이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신자들로부터 헌금을 받아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0시간 동안 열리는 ‘파크원 소순’이 20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선 감칠맛이 없는 K 전 이사장이 신자들의 외사와는 달리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개발회사인 Y22에게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을 이전하고 그만큼 재단에 손해를 끼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이며, 결국 K 전 이사장의 배임에 의한 지상권 설정 계약은 무효

라는 주장이다. 특히 “Y22가 건물을 매각한다면, 당초 통일교 세계본부를 짓기 위한 프로젝트가 사라지는 것으로서, 지상권 설정계약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이기에 계약은 원천무효”라고 못을 박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건물을 파는 것을 단호히 막겠다는 자세다.

여의도 금융허브 정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에서는 여의도 일대를 ‘국제 금융 중심지구’로 지정하여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AIG가 개발하고 있는 SIFC를 비롯해 ‘파크원’도 한몫을 해낼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는 Y22가 승소를 한다면 갈 길은 멀다. 통일교 신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마땅한 탈출구가 보



이지 않기 때문이다. 신한은행과의 자금조달 MOU가 무산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업계에선 자칫 건축 중인 건물들이 흉물로 방치될까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통일재단이 승소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선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 자금조달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통일그룹의 한 관계자는 “수천억원을 조달하는 것은 그들 재정상태로 보여 문제”라고 밝혔다.

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가 국제 금융 중심지로 재 역할을 하기 위해선 어떤 선의를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통일재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게 상투력을 얻는 이유다. 공익적이고 공적인 용인 재산이 개발업자의 영리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신동주 기자

〈세계일보 2011년 7월 12일자 10면〉

통일재단이 승소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선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 자금조달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통일그룹의 한 관계자는 “수천억 원을 조달하는 것은 그룹 재정상태로 보아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가 국제 금융 중심지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통일재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게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공익적이고 공적인 종단 재산이 개발업자의 영리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에서 이른바 ‘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와 관련해 파크원 사업부지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이 시행사인 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 설정 등 기 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여드레 앞두고 원고인 통일교 재단의 주장을 함축해 보도했다.

위 기사는 <Y22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K 전 이사장의 배임에 의한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 등 통일교 재단의 주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Y22가 승소를 한다면 갈 길은 멀다> <통일재단이 승소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통일재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게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등 주관적 견해를 섞어 원고 쪽 주장을 대변하는 듯한 투로 보도했다. 반면 피고인 Y22의 주장과 논리는 기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과 제4조 「사법보도준칙」 전문 및 ①항(재판에 대한 부당영향 금지), 그리고 나아가 신문윤리강령 제1조 「언론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